

윤리경영 실천지침

제1장 총칙

1.1 목적

본 '윤리경영 실천지침'(이하 '지침')은 삼양그룹의 모든 임직원(이하 '임직원')이 윤리경영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1.2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고객, 주주, 협력업체, 임직원,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3 규정 준수의무

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,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.

1.4 위반사항의 제보

- 1)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경영진단팀에 이를 알리고, 경영진단팀은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.
- 2)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 또한,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
1.5 별도 규정의 제정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1.6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

- 1)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2)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, 투명성,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.
 - 합법성: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부합되는가?
 - 투명성: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?
 - 공정성: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?

제2장 고객에 대한 약속

2.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

- 1) 혁신과 도전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한다.
- 2)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3)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,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요청, 반품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.

2.2 고객 보호 및 알 권리 존중

- 1)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,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- 2)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.

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

3.1 주주의 권리 존중

- 1)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.
- 2) 주주의 정당한 요구, 제안 등을 존중하고 경영에 반영한다.
- 3) 지속적인 원가절감, 신사업 발굴 등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3.2 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

- 1)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,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한다.
- 2)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.
- 3)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.

제4장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

4.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

- 1)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며,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.
- 2)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
- 3)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.

4.2 비윤리적 행위 금지

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의 금품수수, 접대/향응수수, 퇴직 후 고용·취업 알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1) 금품수수

구 분	행동 원칙
금품수수 (경조금 등 현금, 물품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지 (단,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 기념품은 제외) •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
금전거래, 공동투자 등	금지
경조사 통지 (승진·전보 포함)	금지
출장지원 등 업무관련 편의 제공 수수 (교통, 숙박 등)	금지 (단,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, 정당한 대가 지불)

2) 접대/향응수수

구 분	행동 원칙
식사	비용 본인 부담
불건전업소	금지
사행성 오락	금지
골프	금지 (단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그룹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제외)

3) 퇴직 후 고용·취업알선 등

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·취업알선, 거래계약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제5장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

5.1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대상기관

정부,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,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, 공기업 및 산하 기업,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, 사립 교육기관과 신문, 방송,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이 해당된다

5.2 부정청탁의 금지

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『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

- 1)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·검사·검정·시험·인증·확인 등 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- 2)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, 조세, 부담금,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범칙금,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·면제하도록 하는 행위
- 3) 채용·승진·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- 4)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·의결·조정 위원회의 위원,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·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5)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6) 입찰·경매·개발·시험·특허·군사·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- 7)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8) 보조금·장려금·출연금·출자금·교부금·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에 배정·지원하거나 투자·예치·대여·출연·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- 9)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·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·교환·사용·수익·점유하도록 하는 행위

- 10)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- 11) 징병검사, 부대 배속,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
- 12)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- 13)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
- 14) 사건의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·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- 15)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·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
5.3 금품제공의 금지

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고, 의례, 부조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, 일정 금액 외 금품제공, 접대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1) 금품의 종류

돈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콘도사용권, 음식물, 주류,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,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/무형의 경제적 이익

2) 행동원칙

구 분	행동 원칙
식사	1회 1인당 3만원 초과 금지 (1회: 1차, 2차 등 합산. 식사, 음료, 음주, 다과 등 합산)
선물	1회 5만원 초과 금지 (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, 합산하여 5만원 초과 금지) ※ 예외 : 농수산물, 농수산물 50%초과 사용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까지 사용가능
경조사비	1회 현금 5만원 초과 금지 (부조금과 선물·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5만원 초과 금지 단,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10만원 가능) ※ 단 회환, 조화 합산 10만원 가능

제6장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
6.1 임직원의 자세

- 1) 임직원은 삼양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2) 임직원은 언제나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언행으로 삼양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.
- 3) 임직원은 상호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, 개개인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.
- 4) 임직원은 삼양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.

6.2 공정한 업무 수행

- 1)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, '신뢰/도전/혁신/인재/고객중심/성과중심'의 삼양가치를 실현한다.
- 2) 임직원은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.
- 3) 임직원은 부서간 이기주의, 우월주의를 배제하고, 상호존중과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- 4) 임직원은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, 직권남용, 허위, 과장, 은폐,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.
- 5)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
6.3 회사 재산의 보호

- 1) 회사의 물적 재산과 사업정보, 기술정보 등 지적 재산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,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 또한 타인의 지적 재산도 동일하게 보호하며,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2)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- 3)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
6.4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

- 1) 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2)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,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,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
- 3) 정리, 정돈, 청결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한다.
- 4)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.

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

7.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

- 1)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, 해당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- 2)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,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- 3) 학력, 성별, 출신지역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7.2 공정한 경쟁

- 1)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- 2)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.

7.3 환경보호 및 안전

- 1) 환경과 안전·보건에 관련된 법규,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2) 환경오염의 방지,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한다.
- 3) 에너지 절약,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힘쓴다.

부 칙

부칙 (2002. 9. 1)

1. (시행일)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6.12. 1)

1. (시행일) 이 윤리규범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5. 21)

1. (시행일) 이 윤리규범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9. 1)

1. (시행일) 이 윤리규범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